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전자정부사업 낙찰자 결정 시
나라장터 사용 의무화〉

■ 운영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736호)

2026.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전자정부사업 낙찰자 결정 시 나라장터 사용 의무화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운영석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10. 28.
3. 회 부 일 : 2025. 10. 2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 중, 특히 기술력과 전문성이 중요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의 제안서 평가는 각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함에 따라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이러한 협상에 의한 계약은 평가위원회의 주관적·정성적 평가가 낙찰자 결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평가의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오히려 입찰 참여자가 평가위원 선정에 개입할 수 있는 구조적 허점과 전문 인력 풀의 한계로 인한 소수 위원의 반복적인 평가는 유착과 담합의 고리를 형성하는 근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특히, ‘전자정부사업’의 경우 고도의 기술성과 복잡성을 내포하고 있어, 평가위원의 전문성 부족 시 제안서의 기술적 우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주관적 평가와 ‘깜깜이 평가’, ‘인

맥 평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둘째, 전자정부사업은 행정의 효율성과 대국민 서비스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 핵심 과제임.

이에 조달청의 'e-발주시스템(나라장터)'을 우선적으로 전자정부사업 분야에 의무적으로 활용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평가위원 선정부터 평가 전 과정에 걸친 인위적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전자정부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하는 「전자정부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부사업의 낙찰자를 결정하기 위해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안 제13조의2제1항 신설).

나. 위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평가는 평가위원의 선정, 제안서의 제출 및 심의, 평가의 진행 등 제안서 평가에 관한 모든 절차를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안 제13조의2제2항 신설).

다. 정보처리장치의 구체적인 이용 방법 및 절차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의2제3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전자정부사업 낙찰자 결정 시 나라장터 사용 의무화

개정안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전자정부법」상 전자정부사업¹⁾(이하 “전자정부사업”이라 함)의 낙찰자를 결정하기 위해 제안서를 평가할 때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13조의2(제안서 평가의 방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하는 「전자정부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부사업에 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위해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평가는 평가위원의 선정, 제안서의 제출 및 심의, 평가의 진행 등 제안서 평가에 관한 제반

1) 「전자정부법」

제64조(전자정부사업의 추진 및 지원)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위한 사업(이하 “전자정부사업”이라 한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u>절차를 포함한다.</u> <u>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이용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u>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대해서는 ①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② 입찰가격, 품질, 기술력, 제안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③ 설계공모에 당선된 자 등을 낙찰자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²⁾.

2) 「지방계약법」

제13조(낙찰자 결정) ②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1.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다만,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2. 입찰가격, 품질, 기술력, 제안서 내용,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3.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의 창의성이 요구되는 설계용역을 할 때에는 설계공모에 당선된 자
4. 그 밖에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맞게 입찰한 자

③ 제2항에 따른 적용대상, 낙찰자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 지방계약법령상 낙찰자 결정 방법>

법률(§13②)		시행령
제1호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원칙 : 최저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42)
		예외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43)
제2호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42의3)
제3호	설계공모에 당선된 자	설계공모 낙찰자 결정(§42의4)
제4호	그 밖에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한 경우 ³⁾	지식기반사업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44)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44의2)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45)
		다량물품을 제조·구매 시 낙찰자 결정(§47)

현행 「지방계약법 시행령」은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낙찰자 결정 방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 시 원칙적으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3)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술성·창작성이 필요하거나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지식기반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44조의2(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전문성·기술성이 요구되는 물품, 용역계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입찰대상자들과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등에 관한 경쟁적·기술적 대화(이하 “경쟁적 대화”라 한다)를 통해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및 계약이행방안 등을 조정·확정한 후 제안서를 제출받고 이를 평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5조(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 계약을 체결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가격에 따라 품질의 질이 현저하게 달라지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제47조(다량물품을 제조·구매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량의 물품을 희망수량에 따라 분할하여 제조·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 이하의 단가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로 수요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심사하되⁴⁾,

예외적으로 물품·용역·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이하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 함)을 체결할 수 있음⁵⁾.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라 제출받은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제안서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세부 심사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게 됨.

이때,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면 제안서평가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국가 및 타

4) 「지방계약법 시행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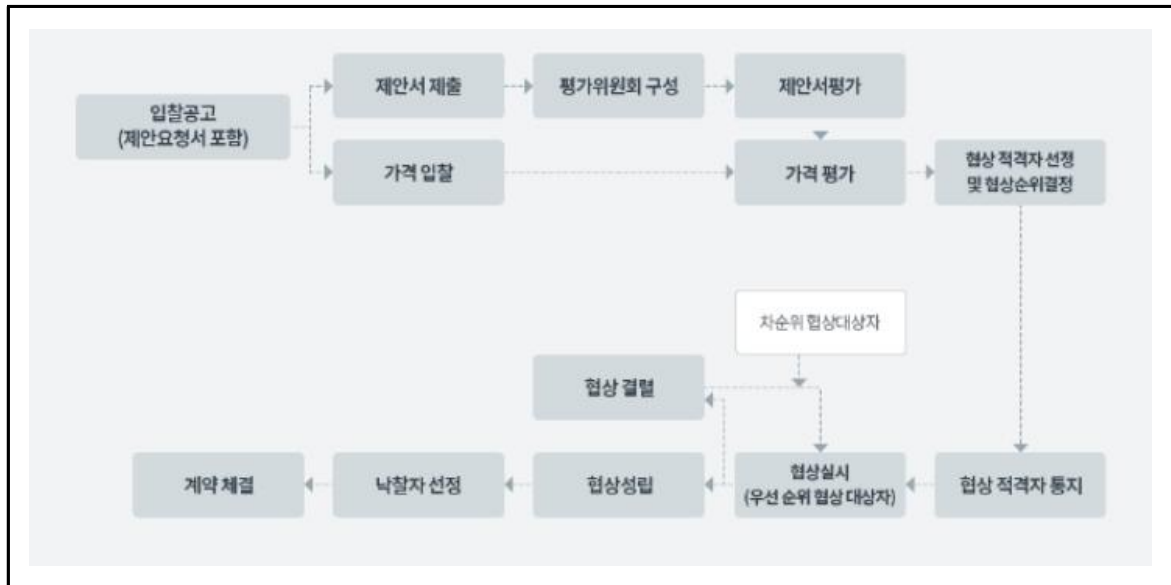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5)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단순 물품구매는 제외한다)·용역(청소·경비 등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은 제외한다)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지자체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7~10명 내외로 구성하여야 함6).

<협상에 의한 계약 시 낙찰자 결정 방법>



※ 자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책자형→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결정

그런데,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제안서 평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구성된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계약 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고도의 기술성과 전문

6)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⑪ 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1. 위원회 구성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43조 제9항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한다.

나.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 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전문가·대학교수 등)로 구성한다.

다.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

성을 요구하는 전자정부사업⁷⁾의 경우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⁸⁾.

이에 개정안은 전자정부사업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할 때 평가위원의 선정, 제안서의 제출 및 심의, 평가의 진행 등 제안서 평가에 관한 제반 절차를 조달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를 통해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통해 제안서 평가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평가 과정이 공개되어 보다 투명한 계약 절차가 추진될 수 있다는 점⁹⁾에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임.

7) 「전자정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정부”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업무를 전자화하여 행정기관등의 상호 간의 행정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를 말한다.

8) 개정안의 제안이유에 의하면, 협상에 의한 계약은 평가위원회의 주관적·정성적 평가가 낙찰자 결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평가의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오히려 입찰 참여자가 평가위원 선정에 개입할 수 있는 구조적 허점과 전문 인력 풀의 한계로 인한 소수 위원의 반복적인 평가는 유착과 담합의 고리를 형성하는 근본 원인으로 지적됨. 특히, ‘전자정부사업’의 경우 고도의 기술성과 복잡성을 내포하고 있어, 평가위원의 전문성 부족 시 제안서의 기술적 우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주관적 평가와 ‘깜깜이 평가’, ‘인맥 평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입장임.

9)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하면,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통해 제안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 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범위에서 제안서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음.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6조(제안서 평가결과 공개) ① 평가집행자는 입찰자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등을 제외한 범위에서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 ② 평가집행자는 제안서 평가 종료 후 3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평가위원별·평가항목별 점수를 공개하되 평가위원실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1조(목적) 이 세부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용역계약에서 조달청장이 제안서 평가를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개정안 심사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법체계와 관련하여 낙찰자 결정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음.

특히, 현행 「지방계약법」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의 낙찰자 결정 방법의 원칙만 법률에 규정하고 적용대상, 구체적인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은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음.

또한, 개정안이 규율하고자 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제안요청서의 교부, 제안서 제출 등의 절차를 전자적 방식을 이용하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¹⁰⁾.

10)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그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제3절 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

2. 제안요청서의 교부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안요청서를 교부해야 하며, 이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함으로써 그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사업내용이 복잡하거나 제안요청서의 요청자가 다수여서 입찰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내용에 대한 기본제안서와 세부제안서를 구분하여 기본제안서를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선정된 자를 제안요청서의 교부대상자로 제한할 수 있다.

3. 제안서의 제출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제안서는 입찰공고나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출하도록 하되, 필요할 경우 전자적 방식(지정정보처리장치, 전자우편, 전자문서 등)을 이용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둘째, 국가계약 제도와의 정합성 측면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의 개정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현행 「국가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도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시 「지방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과 같이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¹¹⁾.

셋째,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하는 전자정부사업에 대해서만 나라장터 이용을 의무화하는 경우, 타 계약방식 및 사업과의 형평성이

4. 제안서의 평가

차. 평가요령

-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 9)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위원회가 제안서를 평가함에 있어 계약목적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화상평가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11) 「국가계약법」

제10조(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②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1. 충분한 계약이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2. 입찰공고나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3. 그 밖에 계약의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한 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용역계약을 할 때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여 협상적격자를 선정한 후 협상절차를 통해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협상적격자를 선정해야 한다.

⑧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조 제6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제안서 평가팀의 심의로 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⑨ 위원회는 각 중앙관서별로 그 중앙관서의 소속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 「지방계약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¹²⁾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해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¹³⁾,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또는 활용하여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정보처리장치를 통한 계약 절차 진행을 유도하고 있음¹⁴⁾.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낙찰자 결정 방식은 기술·사업 환경변화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영역으로, 전자정부사업 분야만 법률에 규정할 경우 제도 운영의 유연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고 다른 평가방식과의 균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전자적 평가를 강제하는 경우, 종합적 판단

1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이 이에 포함됨

13) 「지방계약법」

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4)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조달업무를 전자적 처리)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또는 활용하여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6. 9.>

1. “수요기관”이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3. “조달업무”란 수요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물자 또는 용역의 구매·공급에 관한 업무 및 시설공사 계약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란 제12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이 필요한 기술적 완성도, 사업수행 역량 등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는 점¹⁵⁾, 전자정부사업의 특수성·전문성 등에 대한 고려는 해당 분야의 관리·운영체계와 관련된 사항으로, 관련 법령¹⁶⁾에 별도의 규정을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7

15) 특히, 행정안전부는 현재 계약담당자가 계약목적물의 특성과 평가요소를 고려하여 대면 또는 전자적 방식 중 적합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중으로, 발주기관 필요시 전자적 방식을 선택하여 평가할 수 있다는 입장임.

16) 행정안전부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의 경우 지방계약법보다 협상에 의한 계약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는 설명임.

참고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평가 기준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구 분		평가항목 (예시)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 수행경험(실적) - 경영상태 -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는 핵심인력 - 신인도 - 용역근로자보호지침 - 그밖에 필요한 사항	20	- 계약담당자(또는 사업담당자)가 평가 -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배점 의 30%까지 가능
	정성적 평 가 분 야	- 기술·지식능력 - 사업수행계획 - 지원기술·사후관리 - 상호협력 관계 - 그밖에 필요한 사항	60	평가위원이 평가
가격 평가	입찰가격 평가분야		20	※ 평점산식 : 아래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1]

주1) 정량적 평가분야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성질 · 규모 등과 창의성 · 기술성 · 전문성 등의 취지를 고려하여 적합하게 세부기준을 정해야 한다.

주2)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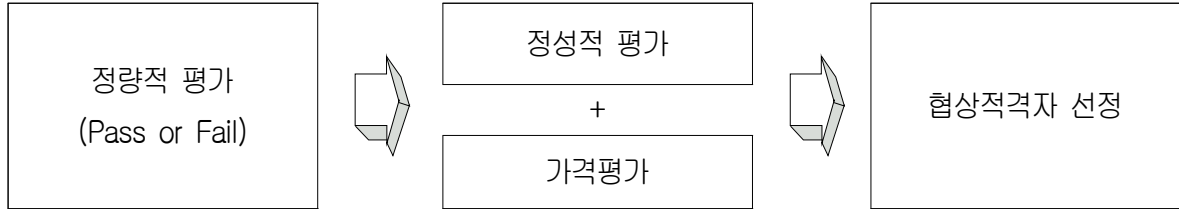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과 「소방장비관리법」 제2조 1호의 보호장비 및 「경찰장비관리규칙」 제68조 제2호의 안전·보호장비 관련 계약의 경우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SW사업과 「소방장비관리법」 제2조 1호의 보호장비 및 「경찰장비관리규칙」 제68조 제2호의 안전·보호장비 관련 계약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주3) ~ 주5) 생략

<제안서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 평가절차



□ 평가항목

구 분	평가분야		평가항목(예시)	배점
1차 평가	정량적 평가		▪ 수행경험(실적) ▪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는 핵심인력 ▪ 경영상태 ▪ 신인도 ▪ 용역근로자보호지침 ▪ 그밖에 필요한 사항	Pass or Fail
2차 평가	정성적 평가	용역	▪ 기술·지식능력 ▪ 사업수행계획 ▪ 지원기술·사후관리 ▪ 상호협력 관계 ▪ 그밖에 필요한 사항	80
	입찰가격 평가			20
	계			100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2]

- 주1) 평가항목별 세부기준은 해당 사업의 특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 주2) 정량적 평가는 적정한 경쟁이 성립될 수 있도록 기준(과도한 평가기준 설정을 금지한다.)을 정해야 한다.
- 주3)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별표 1>의 “주2)”를 적용한다.
- 주4) 단순노무 일반용역이 일부 포함된 경우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여부를 평가항목에 포함하여야 한다.
- 주5)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 평가 시 수행실적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한다. 다만,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